

김천의료원 직원 모집 공고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김천의료원에서는
도민의 건강증진과 공공의료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직종별 모집인원 및 응시자격

가. 직종별 모집인원

구 분	직종(직위)	모집 인원	세부 응시자격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사업계약직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팀원	1명	[필수사항] - 면허증: 간호사 - 자격증: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국가공인 발급, 면허(자격)증 中 1개이상 소지자) [우대사항] - 배아생성의료기관 근무 경험자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담당업무	- 상담, 프로그램 지원 및 등록관리 - 정보 제공 및 홍보 - 회계, 행정, 자료 수집 및 분석 등 - 교육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연구 등 - 대상자발굴(임산부 관련 방문사업 등) - 회의 개최 및 운영 - 교육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연구 등 - 환자 발굴(임산부 관련 방문사업 등) - 심리상담, 상담 프로그램 지원 등 - 심리검사 및 상담 등 - 회계, 행정, 자료 수집 및 분석 등 -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 - 난임·우울증상담센터 팀원관련업무 일체		
근로조건	-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은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사업지침”에 따름 (필요시, 김천의료원 취업규칙 및 관련 지침에 따름) - 영리업무 겸직 금지		
보 수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비 고	- 계약기간과 별도로 사업종료(만료)시 계약종료 - 계약기간은 임용일로부터 최대 1년 3개월간 조건부(수습)기간 거침		

나.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및 김천의료원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모집방법

구 분	내 용	
채용방법	▪ 김천의료원 규정에 의한 채용	
공고방법	▪ 김천의료원 홈페이지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s://gcmc.recruiter.co.kr/)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1부 ▪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1부 ▪ 해당 면허(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 대학(전문대학) 이상 졸업 증명서 ▪ 대학(전문대학) 이상 성적 증명서	비 고
		▪ 온라인 제출 ▪ 스캔본만 인정하며, 사진 촬영 등은 불인정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는 면접 합격자 발표문 참고

3.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2025.08.08.(금) ~ 2025.08.25.(월)	
서류전형	-	개별 통보
면접전형	개별 통보	김천의료원 홈페이지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4. 전형기준

구 분	대 상	내 용
서류전형	채용전형 응시자	▪ 자격요건 적격 여부 판단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 가산점 포함 면접위원 평균 점수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 평균 점수 60점 미만, 1/2이상의 면접위원에게 60점 미만을 받는 경우 과락

5. 기타사항

가. 전형별 합격자는 다음 전형에 응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불합격 처리됨
나. 면접전형 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공무원 기준)를 실시하여야 하며, 미검사 또는 이상자는 불합격 처리됨
다.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르거나 채용 과정 중 불공정 채용(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가족채용제한) 포함)에 대한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채용절차상 안내된 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함
라. 응시하고자 하는 직종을 반드시 확인한 후 지원해야 하며, 항시 연락 가능한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함
마.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접전형 만점의 10% 또는 5%, 의사상자 등은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3%의 가산점이 있음
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적용
사. 예비합격자는 모집인원의 2배수로 하며,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퇴직,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함
아. 채용전형 시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서류를 반환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다만, 온라인 접수를 통해 제출한 자료는 제외)
자.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
차. 이의 제기, 기타 사항은 인사팀(054-429-8172/8056)으로 문의 바람

2025년 8월 8일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장